

부산광역시 금정구 공고 제2026-68호

구서동(금화,산호,삼산) 소규모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

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194-11번지 일원의 「구서동(금화,산호,삼산) 소규모재건축사업」과 관련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하오니,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, 그 밖의 정비사업과 관련한 이해관계인은 사업시행계획 관계 서류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5월 15일

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

1. 공람기간 및 장소

가. 공람기간: 2026. 5. 20.(수) ~ 2026. 6. 3.(수) 14일간

나. 공람장소

1) 금정구청 건축과

주 소: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777, 별관 2층 (☎ 051-519-4611)

2) 구서동(금화,산호,삼산)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사무실

주 소: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907, 2층 (☎ 051-513-7732)

다. 공람도서: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 도서 등 관계 서류(공람장소에 비치)

2. 사업의 내용

가. 사업시행자 성명 및 주소

1) 성 명: 구서동(금화,산호,삼산) 소규모재건축조합(조합장 유재명)

2) 주 소: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1907, 2층

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: 구서동(금화,산호,삼산) 소규모재건축사업

다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: 부산광역시 금정구 구서동 194-11 일원(8401.2㎡)

라. 사업의 규모

- 건축규모: 지하3층~지상27층, 3개동, 공동주택(285세대) 및 근린생활시설

마. 사업시행기간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 이내

바. 주요 변경 사항: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그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변경

3. 의견제출 대상 및 제출 방법

가. 대 상 자: 정비구역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, 그 밖의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

나. 방 법: 공람기간 이내에 의견서(공람장소 비치) 작성 제출

다. 제 출 처: 공람장소